

제 413 호

1973.11.7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# 시보

차 례

◎ 규 칙

제 1325 호 광고물등단속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..... 3

제 1326 호 서울특별시 도시미화협의회규칙  
폐지규칙 ..... 24

제 1327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시행규칙  
중 개정규칙 ..... 24

◎ 공 고

제 208 호 환지에 정지변경지정공고 ..... 25

◎ 사 령 ..... 25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규 칙

광고물등 단속법 시행규칙중 개정  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73년 11월 6일  
서울특별시 시장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325호

광고물등단속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 
광고물등 단속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를 다음과같이 한다.

제 2조 (금지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
하는 지역과 장소 또는 물건(이하  
"지역등"이라한다)에 광고물또는  
게시시설(이하 "광고물등"이라한다)  
을 표시 또는 설비하거나 살포할  
수 없다.

- 1. 도시계획법제 17조, 제 18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개발제한지역, 녹지지역, 풍치미관지구, 교육 및 연구지구, 업무지구, 보존지구 및 특정가구정비지구중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

- 2. 문화재보호법제 7조, 제 9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

조물, 기념물 및 보호구역중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

3. 산림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중 시장이 지정하는구역

3.의 2. 공원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

4. 고분, 묘지, 화장장및 그경내

5. 철도선로

6. 관공서, 학교, 병원, 공회당, 도서관, 기념관, 미술관, 사찰, 박물관, 교회등 및 그의부속 건조물 시설과 그 경내

7.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육교 및 두대

8. 가로수 및 기타의 수목

9. 입상, 기념비와 기념탑 및 그 경내

10. 발전소, 변전소, 송전탑, 송신탑, 조명탑, 전기탑, 수도 탱크, 수도천, 소화전, 가스탱크 또는 유류탱크 및 그 경내

11. 우편함, 공중전화소, 공중변소, 시계탑, 화재경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건조물

12. 석축물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

13. 시장이 지정하는 게시판 및 공

|  |  |
|--|--|
| <p>보관 이외의 장소에 첨부하는 벽보<br/>류</p> <p>14. 도로표지, 안전표지, 신호기, 보도<br/>책, 버스 및 기타 자동차등의 정류<br/>장 표시물에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<br/>설치하거나 동표시물등을 유지 보호<br/>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<br/>근의 장소에 표시 또는 시설하는<br/>광고물</p> <p>15. 전망대 기타 전망을 위한 지역</p> <p>16.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 및<br/>거마 또는 인축에의한 이동식광고<br/>다만 자동차에 한하여 별표 10의<br/>기준에 적합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<br/>하다.</p> <p>17. 고속도로 접도구역내의 조명식<br/>및 반사식광고물 다만 도로와 평행<br/>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별표 5의<br/>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<br/>니하다.</p> <p>18. 고가도로 노면 양단으로부터 50<br/>미터이내 또는 고가도로 노면높이<br/>이상에 설치하는 점멸식광고물</p> <p>19. 고속도로 국도또는 간선철도의<br/>동일로선 연변에 설치하는 2개를</p> | <p>초과하는 동일내용의 야립광고물</p> <p>20. 건물의 각창문에 문자나 상표등<br/>의 광고표시 다만 정문에 상품명표<br/>시를 제외한 기업체명이나 상호 영<br/>업주 또는 전화번호등을 기재하는것<br/>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21. 고속도로의 교량터널 1,000미터이<br/>내, 인터체인지 3,000미터이내 또는<br/>고속곡각지점 1,000미터이내에 설치하<br/>는 야립광고물 다만 교량의 길이가<br/>50미터이내에 해당하는것은 그러하지<br/>아니하다.</p> <p>22. 산의 정상부 또는 전답에 설치<br/>하는 야립광고물 다만 농지의 보전<br/>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경<br/>지의 전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<br/>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23. 제작자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아<br/>니한 광고물</p> <p>24. 제 8 조의 규정에의하지 아니한<br/>광고물</p> <p>25. 전각호 이외의 도시미관과 풍치<br/>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<br/>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등</p> <p>제 3 조항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</p> |
|--|--|

20-3

제 2 항의 "별표제 1 호" 를 "별지제 1 호" 로 하며 제 4 항을 삭제하고 제 5 항을 제 4 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다음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등에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살포하고자 할때에는 그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 2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칠때와 전단의공중살포, 야립광고물 또는 옥상광고물중 고가도로변이나 높이 4 미터 이상의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주된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도시계획법 제 17 조, 제 18 조 및 제 21 조의 규정예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개발제한구역, 녹지지역, 풍치미관지구, 교육연구지구, 업무지구, 보존지구 및 특정가구정비지구

2. 문화재보호법 제 11 조의 규정예의하여 지정된 구역 및 제 2 조 제 3 호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

3. 철도선로용지 및 그로부터 전망

되는 지역

4. 공원, 녹지, 광장, 운동장, 경마장, 도선장, 주차장 및 주유소

5. 도로법제 12 조, 제 13 조, 제 14 조 및 제 54 조의 2 에 규정하는 고속도로 및 특별시도와 고속교통구역에 면하는 지역 및 그로부터 전망되는 지역

6.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지역및 도로, 하천, 공유수면

(4)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또는 설치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사양서 및 설계도에 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, 표시또는 설치후 7 일이내에 별지제 2 호서식에 의하여 허가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① 옥외광고물 제작을 업으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하여 영업소재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전항의 등록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별지제 5 호서식에 의한 등록필증

을 교부하여야 한다.

(3)경찰서장은 별지제 4 호서식에 의한 등록부를 비치 기재하고 등록내용의 변경이 있을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

제 4 조중 제 3 호의 단서와 제 4 호 및 제 5 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 6 호와 제 7 호를 각각 제 4 호와 제 5 호로 하여 제 8 호를 제 6 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6 . 시설물자체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그경내에 설치하는 표찰, 고지류등이나 지장이 도시미관상 특정장소에 광고게시시설 및 광고물을 설치 또는 표시하게 할때에는 제 2 조 및 제 8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

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7 조 ( 허가 및 등록번호표시) 제 3 조의 규정에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는 그 광고물의 일부에 허가번호와 제작자, 등록번호 및 제작업소명을 별표 12 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.

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8 조 (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방법)

1)광고물등의 형상, 규격, 색채, 거리, 구조, 의장, 내용, 기타의 표시 또는

설치방법은 별표 1 내지 12 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2)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외국문자를 병용 표기할때에는 한글문자크기의 2분의 1 이내로하고 한글을 먼저 외국문자를 그다음에 표기하여야 한다.

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9 조 ( 광고물등의내용) 다음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살포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 . 국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것
- 2 . 국제간의 우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것 .
- 3 . 국민정신을 해이하게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시책에 어긋나는것
- 4 .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된것 .
- 5 . 음란 또는 선정적내용으로 성도덕 관념을해할 우려가 있는것
- 6 . 청소년의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것
- 7 . 사실을과장하거나또는 허위 선전한것
- 8 . 기타 공안을 해할우려가 있는것

제 10 조 제 1 호중 "제 6 조 내지" 를 "제 8 조 및" 로 한다.

제 11 조 제 3 항 제 2 호중 "제 9 조 등의" 를 삭제한다.

제 12 조중 "지정등" 을 "지정 및 변경" 으로 한다.

별표 제 1 호 서식 내지 별표 제 3 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1 내지 12 및 별지 제 1 호 서식 내지 별지 제 5 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허가된 광고물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.

(3) (동전)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(4) (동전)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광고물등으로서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개수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.

1. 별표 5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금지구역에 설치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개수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.

2. 별표 1 내지 별표 4, 별표 7 내지 별표 10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수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.

3. 별표 6 및 별표 11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개수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.

다만 영동출장소 관할지역은 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수이전 철거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(별지제 1 호서식)

광고물표시 ( 게시시설 ) 허가신청 ( 신고 ) 서

|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|
|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|
| 신청<br>자  | 주 소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|
|  | 업 소 명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|
|  | 성 명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|  |   |
| 광고물의종류<br>및 수 량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|
| 표시( 설치 )의<br>위치 또는 장소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|
| 표 시 또 는<br>설 치 기 간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|
| 착 공 예 정 일  |       |                | 준 공 년 월 일          |      |  |   |
| 공 시<br>공 사<br>자  | 주 소   | 업 소 명          | 제 작 업 자<br>등 록 번 호 |      |  |   |
|  | 성 명   | 주 민 등 록<br>번 호 | 전 화 번 호            |      |  |   |
| 관 리 자 의 주 소<br>성 명   |       | 전 화 번 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|
| 기 타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|
| 광고물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<br>신청합니다.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|
| 19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|
| 시도지사<br>경찰서장   |       | 귀하             | 신청인<br>(대표자)       |      |  | ① |
| ※ 주<br>1. 신청인은 영업소 및 점포등을 경영하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<br>2. 신청인이 법인일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명칭, 대표자의 성명을<br>기재하여야 한다.<br>3.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br>가. 규격, 형상, 자료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<br>나. 설치장소의 사진 및 광고물의 천연색 도안 또는 사진도안<br>다. 높이 4 m를 초과하는 옥상광고물에 대하여런 공작물 설치허가서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|

(별지제 2호서식)

광 고 물 설 치 준 공 신 청 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|
| 허 가 번 호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|
| 작공및준공년월일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|
| 광 고 물 의 종 류<br>수 량 , 규 격 |  |      |  |
| 표시(설치)의위치<br>또 는 장 소     |  |      |  |
| 광고주의주소성명                 |  | 전화번호 |  |
| 공사시공자의주소<br>성 명 (업소명)    |  | 전화번호 |  |
| 공사감리자주소<br>성 명 (업소명)     |  | 전화번호 |  |
| 관 리 자 의 주 소<br>성 명 (업소명) |  | 전화번호 |  |

광고물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19

광고주 ㉠  
시공자 ㉡

시도지사 귀하  
경찰서장

※ 공사감리한계  
높이 4미터이상 광고물  
길이 3미터이상의 돌출광고물



(별지제 3 호서식)

광 고 물 제 작 업 등 록 신 고 서

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신         | 주 소   | 영업소재지          |     |
| 청         | 업 소 명 |                |     |
| 인         | 성 명   | 주 민 동 록<br>번 호 | 전 화 |
| 공 장 소 재 지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
| 영 업 의 종 목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
| 종 업 원 수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
| 기 타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

광고물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 3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 신고합니다.

19 . . . . .

신 고 인

㉠

경 찰 서 장 귀 하

※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영업감찰 사본
2. 사단법인 광고물 제작가협회 회원증 사본

(별지제 4 호서식)

광 고 물 제 작 업 자 등 록 대 장

| 일련<br>번호 | 등 록<br>년월일 | 영 업 소 |      | 등 록 자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비 고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| 명 칭   | 소재 지 | 주 소   | 성 명 | 연 령 | 주 민 등 록 번 | 등 록 호 |     | 등 록 번 |
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

(별지 제 5 호서식)

등 록 필 증

등록제 호

주 소 :

성 명 :

|             |       |  |
|-------------|-------|--|
| 영<br>업<br>소 | 명 칭   |  |
|             | 종 목   |  |
|             | 소재지   |  |
|             | 공장소재지 |  |
|             | 기 타   |  |

광고물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 3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하였으므로 등록필증을 교부합니다.

19 . . .

경 찰 서 장

㉠

27-11

| 별표 1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횡 간 판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
| 지역별   | 건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규격                      | 색채  | 형상                 | 설치방법  | 허가여부 및 기간 |
| 1. 주거지역<br>2. 교육 및 연구지역<br>3. 업무지역<br>4. 보존지역 | 1. 고층건물<br>2. 연립 "<br>3. 영구 " | 세로 70cm×<br>가로 5m<br>이내 | 1. 단일색<br>2. 적, 형광도<br>료는 사용금지  | 조각형                | 1. 벽체에 직접 글씨나 도안으로 (입체형) 부착하되 4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.<br>2. 1개업소에 1개에 한한다. 다만 도로곡각지점에 면한 업소는 예외로 한다. (측면설치가능)<br>3. 벽체에서 20cm 이상 돌출할 수 없다.<br>4. 조명은 가능하나 (발광포함) 네온류는 사용할 수 없다.<br>5. 동일 건물내의 표시 위치는 통일되어야 한다. | 허가배제      |
|   | 1. 한옥<br>2. 가건물               | 70cm×3m<br>이내           | 1. 단일색<br>2. 적, 형광도로는 사용금지<br>3. 이면틀 가터운시 설의배 색은 단일 색(흑, 적, 형광도 료사용 금지) | 1. 평면 분자<br>2. 조각형 | 1. 벽체에 직접 글씨나 도안으로 (입체형) 부착하되 4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.<br>2. 1개업소에 1개에 한한다. 다만 도로곡각지점에 면한 업소는 예외로 한다. (측면설치가능)<br>3. 벽체에서 20cm 이상 돌출할 수 없다.<br>4. 조명은 가능하나 (발광포함) 네온류는 사용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1. 상업지역<br>2. 공업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고층건물<br>2. 연립 "<br>3. 영구 " | 70cm×건물<br>폭 이내         | 1. 4색이내 (적색은 분자 면적의 3분의 1 이내)   | 조각형                | 1. 벽체에 직접 글씨나 도안으로 (입체형) 부착하되 4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. 다만 건물전체 (영업소) 의 명을 건물 상단 (규격이내) 에 표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  |           |

| 지역별    | 건물별  | 규격  | 색채형상                     | 설치방법   | 허가여부 및 간  |
|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       |  |   | 2. 형광도<br>표사용<br>금지      |  | 2. 1개소에만한다. 1개에<br>한다. (한 점의 치거) 20cm 이상<br>설치할 수 없다.<br>3. 돌출할 수 없다. (네온류의<br>4. 조명·발광·내열<br>5. 동일물내외<br>차이한다.   |
| 1. 한 옥 | 세로 70 cm<br>X가로 3 m<br>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4색이<br>내 (최소<br>은면적의 1<br>3분의 1<br>2. 형광도<br>표사용<br>3. 이면<br>가시색은<br>배색<br>년 (형광<br>표사용<br>금지) | 1. 평면<br>2. 조각<br>분<br>불 | 1. 벽체에 안으로<br>나치 부착하 (수<br>설건물내에 )<br>2. 한 점의 치거<br>3. 한 점의 치거<br>4. 돌출할 수<br>5. 동일물내외 | 1. 벽체 안으로<br>나치 부착하 (수<br>설건물내에 )<br>2. 한 점의 치거<br>3. 한 점의 치거<br>4. 돌출할 수<br>5. 동일물내외<br>2. 한 점의 치거<br>3. 한 점의 치거<br>4. 돌출할 수<br>5. 동일물내외<br>3. 한 점의 치거<br>4. 돌출할 수<br>5. 동일물내외 |
| 특별 지역  | 1. 고층건물<br>2. 인접 " "<br>3. 영구 " 옥<br>4. 한 건물<br>5. 가건물 | 건물전면  | 제한없음<br>(이면시<br>설 가능)    | 조각 품   | 1. 벽체 안으로<br>나치 부착하 (수<br>설건물내에 )<br>2. 한 점의 치거<br>3. 한 점의 치거<br>4. 돌출할 수<br>5. 동일물내외   |

| 별표 2 중 간 판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지역별          | 건물별     | 규격     | 색채     | 자세면적 | 설치방법          | 허가여부<br>및<br>기간 |
| 1. 주거지역      | 1. 고층건물 | 세로 2 m | 1. 단일색 | 표시면적 | 1. 2층 이상에는 설치 | 허가              |
| 2. 교육 및 연구지역 | 2. 연립 " | X 가로   | 2. 지색은 | 의 3분 | 할 수 없으며 1층    | 비제              |
| 3. 업무지역      | 3. 영구 " | 60 cm  | 흑, 적,  | 의 2  | 입구 양측 2개한     |                 |
| 4. 보존 "      | 4. 한옥   | 이내     | 형광도    | 이내   | 설치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5. 상업 "      | 5. 가건물  |        | 료사용    |      | 2. 기준규격내 연합   |                 |
| 6. 공업 "      |         |        | 금지(자   |      | 광고 가능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7. 특수 "      |         |        | 색은 적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색사용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금지)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내  
1

별표 3

돌 출 광 고 불

| 지역별   | 건물별   | 규격  |              | 색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채면적           | 설치방법   | 허가여부 및 기간      |
|---|---|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
|   |   | 돌출  | 길이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|
| 1. 주거 지역<br>2. 교육 및 연구 지역<br>3. 업무 지역<br>4. 보존 지역 | 1. 고층 건물<br>2. 연립 건물<br>3. 영구 건물                    | 도로경계로부터 1m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당해건물지붕 높이 이하 | 1. 단일색<br>2. 지색은 형광도료 사용금지<br>3. 적색사점색사점 | 표시면적의 3분의 2 이내 | 1. 지상의 높이는<br>가.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있는 곳은 지상 3m 이상 설치<br>나.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곳은 지상 4m 이상 설치<br>2. 1개 건물에는 돌출 간판 1개만 설치한다. 다만 건물전면 폭 10m 이상일 때는 10m마다 1개씩 추가할 수 있다. (연합광고가능)   | 허가<br>360<br>일 |
|   | 1. 한옥<br>2. 가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| "            | "  | "              | 3. 벽면과 광고불은 밀착시켜야 하며 간격을 둘 필요가 있을 때는 30cm 이내로 한다. (규격이내)<br>4. 한옥이나 가건물 이면을 가리운 시설상을 지붕으로 간주한다.<br>5. 철주를 설치하고 광고불을 부착할 경우 도로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고 차기 소유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.<br>6.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는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품의 외부노출을 금한다. (낙하방지시설) |                |
| 1. 상업 지역<br>2. 공업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고층 건물<br>2. 연립 건물<br>3. 영구 건물<br>4. 한옥<br>5. 가건물 | 도로경계로부터 1m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당해건물지붕 높이 이하 | 1. 4색이내<br>2. "<br>3. 적색 3분의 1이내         | 3분의 2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|
| 1. 특수 지역  | 1. 고층 건물<br>2. 연립 건물<br>3. 영구 건물<br>4. 한옥<br>5. 가건물 | 1. 도로경계로부터 1.5m 이내 (로폭이 10m 이상인 경우 2.기타지역은 1m 이내) | 당해건물지붕 높이 이하 | 제한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|

28-15

| 별표 4 옥·상·광·고·물 (광고탑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
| 지역 별  | 건물 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규 격  | 색 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 치 방 법  | 허가여부 및 기간 |
| 1. 주거지역<br>2. 교육 및 연구지역<br>3. 업무지역<br>4. 보존지역 | 1. 고층건물<br>2. 연립건물<br>3. 영구건물 | 1. 높이 : 지상으로 부터 4 m이내<br>2. 지상으로 부터 50 m이내<br>3. 길이는 건물폭이내 | 1. 4색이내<br>2. 지색은 흑, 적, 형광도료사용 금지 | 1. 도로에 면한 옥상 전면외측과 평행하거나 U, □, △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<br>2. 광고물의 이면과 하단의 지주등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<br>3. 1개 건물 옥상에는 1개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못한다. 다만 연립건물의 경우는 30 m간격으로 증설할 수 있다.<br>4. 개시시설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부속품류등은 검정품 및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 | 허가 360일   |
|   | 4. 한 옥<br>5. 가건물              | 금 지  | 금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|
| 1. 상업지역<br>2. 공업지역<br>3. 특수지역                 | 1. 고층건물<br>2. 연립건물<br>3. 영구건물 | 1. 당해건물 높이의 1/2이내<br>2. 지상으로 부터 80 m이내                     | 1. 지색은 흑, 적, 형광도료사용 금지            |  |           |
|   | 4. 한 옥<br>5. 가건물              | 금 지  | 금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|



| 별표 5 야 립 광고 물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도로번           | 도로와의<br>거리 | 광고물상<br>호 거리     | 규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색 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 치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허가여부<br>및 기간 |
| 1. 고속도로       | 100m 이상    | 2 km 이상<br>(편 도) | 지상 10 m<br>이내<br>하단 3 m<br>이내 | 1. 지색은<br>흑, 적,<br>형광도로<br>사용금지 | 1. 당해도로<br>에서 이면<br>에 노출되<br>지 않도록<br>한다. | 허가<br>360일   |
| 2. 철 도        | "          | "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적색은<br>표시면적<br>의 1/30이내      | 2. 전도방지<br>설치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3. 국 도        | 70 m 이상    | 1 km 이상          | 지상 5 m<br>이내<br>하단 1 m<br>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|
| 4. 김포가두       | 150 m 이상   | 700 m 이<br>상     | 지상 10 m<br>이내<br>하단 3 m<br>이내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|

27-17

별표 6

## 공 연 광 고 물

| 규 격   | 수 량                | 색 채          | 설 치 방 법   | 허가여부<br>및 기간 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
| 새로 : 건물<br>높이의<br>$1/4$ 이내<br>가로 : 건물<br>전면폭의<br>$1/2$ 이내<br>※ 건물이라<br>함은 공<br>연장 천<br>용건물<br>또는 공<br>연장으로<br>사용되는<br>건물의<br>부분 | 상영 프로 1<br>차기 프로 1 | 형광도료사<br>용금지 | 1. 건물벽면으로 부터 30<br>cm 이상 돌출할 수 없으며<br>낙하 방지 시설을 하여야<br>한다.<br>2. 광고물 하단을 3 m 이상<br>으로 한다.<br>3. 실물의 모형등을 도안한<br>때에도 규격을 초과할 수<br>없다.<br>4. 동일내용은 1 개한 표시<br>할 수 있다. | 허가공연<br>종료시까지 |

별표 7 공공시설물등을이용하는광고물

| 규격                | 색채                      | 설치방법                       | 허가여부 및 기간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공공시설물 표시면적의 1/3이내 | 3색이내 지색은 흑, 적, 형광도로사용금지 | 1.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. | 허가 360 일  |

별표 8 전주 및 가로등주이용광고물

| 종별   | 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상높이           | 색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치방법  | 허가처분 및 기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둘레광고 | 세로 1 m 이내<br>가로 30 cm 이내   | 지상으로 부터 3 m 이상 | 1. 3색이내<br>2. 지색은 적형광도로 사용금지 | 1. 1개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둘레 1, 둘출 1을 초과하지 못한다.<br>2. 도로표지 (안전표지)가 첨부된 전주 및 가로등주에는 광고물부착을 금지한다. | 허가 360 일  |
| 둘출광고 | 세로 90 cm 이내<br>가로 45 cm 이내 | 지상으로 부터 3 m 이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

| 별표 9 서비스광고물 ( dealer helf )   |   |  |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색채  | 설치방법   |                   |  | 허가여부및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당해광고물 표시면적의 1/3 이내            | 1. 3 색이내<br>2. 광고판인경우 지색은 적, 흑, 형광도로 사용금지 | 1. 광고의 동일내용은 1개 한 표시한다.<br>2. 광고내용물의 상품류를 계속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.<br>3. 횡간판에 한한다. |                   |  | 허가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별표 10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 ( 지하전차포함 ) |   |  |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표시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규격  | 색채   | 자료                | 설치방법   | 허가여부및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버스 ( 전차 ) 내부좌석 상부공간        | 세로 30 cm<br>가로 30 cm                      | 1. 지색은 적, 흑, 형광도로 사용금지   | 실크지 마 니라브루지       | 1. 미려한 액자안에 설치 하여야 한다.<br>2. 내부벽과 밀착하여야 한다.<br>3. 1개 차내에 동일내용 1개 개시한다.                   | 허가 180 일<br>다만광고내용변경시마다 5 일전에 신고 |
| 2. 차량양 측면및 우면 ( 자기차량 )        | 문자, 회화표시면적 1/10 이내<br>상표 : 1/10 이내        | 1. 지색은 적, 백, 형광도로 사용금지 ( 상표인경우 제외 )  | 1. 평면 문자<br>2. 첩판 | 1. 차량전면에 광고표시는 금한다.<br>2. 자가용및계약차량에 한하며 자기회사명, 상표, 상품이외표시는 금한다.<br>3. 광고판인 경우는 밀착시켜야 한다. | 허가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별표 11<br>기타 광고물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|
| 종 류             | 규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색 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 치 방 법  | 허가 여부<br>및 기간    |
| 1. 입간판          | 지상 10 m<br>이하<br>폭 10 m이<br>내  | 1. 4 색이내<br>2. 지색은흑,<br>적, 형광도<br>료사용금지 | 1. 천도방치조치를 하여야<br>한다.<br>2. 통행방해가 되지 않도<br>록 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허가 ( 30<br>일이내 ) |
| 2. 현수막          | 폭 : 1 m이<br>내<br>길이 : 현장<br>조화 | 1. 3 색이내<br>2. 지색은흑,<br>적, 형광도<br>료사용금지 | 1. 공중의 통행방해가 되<br>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br>2. 지상 높이 4 m 이상으로<br>하고 지붕높이 이하로<br>하여야 한다. | "                |
| 3. 프랑카<br>드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공중의 통행방해가 되<br>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br>2. 지상높이 5 m 이상으로<br>한다.  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|
| 4. 애드바<br>드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| "                |

별표 12

등 록 번 호 표 시 규 격

6 cm

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
| 허가번호  | 1 - 2 - 1 |
| 등록번호  | 1 - 1 - 1 |
| 제작업소명 |           |

5 cm

경 찰 서 별

| 서 별   | 고 유 번 호 | 서 별   | 고 유 번 호 |
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중 부   | 1 - 1   | 마 포   | 1 - 9   |
| 중 로   | 1 - 2   | 영 등 포 | 1 - 10  |
| 남 대 문 | 1 - 3   | 성 동   | 1 - 11  |
| 서 대 문 | 1 - 4   | 노 량 진 | 1 - 12  |
| 동 대 문 | 1 - 5   | 동 부   | 1 - 13  |
| 용 산   | 1 - 6   | 서 부   | 1 - 14  |
| 성 북   | 1 - 7   | 북 부   | 1 - 15  |
| 청 량 리 | 1 - 8   | 남 부   | 1 - 16  |

경찰서가 신설될 경우 신설순위에 의거 계속번호를 부여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미화협의회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73년 11월 6일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326 호

서울특별시도시미화협  
의회규칙 폐지규칙

서울특별시규칙제 555호 ( 66.5.12)  
서울특별시 도시미화협의회규칙은 이  
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  
행한다.

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 
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73년 11월 6일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327 호

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  
행규칙중개정규칙

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시행규칙중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 1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 
한다.

(13) 녹지구장은 녹지분과위원회를  
주관한다.

제 6 조중 " 제 5 호 " 를 삭제하고  
" 제 6 호 " 를 " 제 5 호 " 로 한다.

제 20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20 조 ( 녹지분과위원회 ) (1) 녹지분과  
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도시조경에 관한 사항
  2. 공원및 녹지에 관한사항
- (2)간사는 조경과장 서기는 조경  
1계장이 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
한다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08 호

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

1. 영동지구 및 영동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제 1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와 서울특별시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법 조례제 11 조와 영동제 2 지구 및 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법 조례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변경하였기 공고한다.
2. 환지에정지 변경조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 과와 영동출장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합니다.

1973. 11. 11.

서울특별시장

사 명

◎ 1973. 9. 30.

총무과 지방행정 (직위해제중) 주사보 김용석

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

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◎ 1973. 10. 21.

영등포구 지방행정 세무 1 과 서기 조만형

시민과 파견 (73.10.21-73.12.31) 근무를 명함.

◎ 1973. 10. 31.

방호담당관실 지방통신기 김홍경

관세청 진출을 명함.

◎ 1973. 11. 1.

안전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 허응도

관광과 파견 (73.11.1-73.12.31 까지) 근무를 명함.



|   |              |  |
|---|--------------|--|
| <p>주택행정과 지방행정<br/>시 관공과 파견 ( 73.11.1-<br/>73.12.31까지 ) 근무를 명함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신 창 식</p> | <p>1 호봉을 급함.<br/>구회정리 2 과 근무를 명함.<br/>김 진 욱</p>  |
| <p>중 구 지방행정<br/>시 서 기 조 성 현<br/>지방보건기원에 임함.<br/>3 호봉을 급함.<br/>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</p>            | <p>조 성 현</p> | <p>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임함.<br/>1 호봉을 급함.<br/>서대문구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.<br/>이 혜 숙<br/>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.<br/>1 호봉을 급함.</p> |
| <p>◎ 1973.11. 5.</p>  |              |  |
| <p>성 동 구 지방행정<br/>시 서 기 조 동 석<br/>영등포구 근무를 명함.</p>  | <p>조 동 석</p> | <p>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.<br/>김 경 자</p>   |
| <p>감 사 원 감사주사 김 선 범<br/>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<br/>지방행정주사에 임함.<br/>2 호봉을 급함.<br/>청소제 1 과 근무를 명함.</p> | <p>김 선 범</p> | <p>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<br/>1 호봉을 급함.<br/>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.<br/>민 순 희<br/>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</p>                   |
| <p>양 명 덕<br/>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임함.<br/>1 호봉을 급함.<br/>구회정리 2 과 근무를 명함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양 명 덕</p> | <p>1 호봉을 급함.<br/>아동병원 근무를 명함.<br/>신 명 자<br/>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한 형 록<br/>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임함.</p>   | <p>한 형 록</p> | <p>1 호봉을 급함.<br/>중부병원 근무를 명함.</p>  |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윤종금            | 1호봉을 급함. |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.       |     |
|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박옥미 |
| 1호봉을 급함.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.   |          |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     |     |
| 이임순            | 1호봉을 급함. |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.       |     |
|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정복희 |
| 1호봉을 급함.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.  |          |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     |     |
| 조영희            | 1호봉을 급함. |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.       |     |
|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정선숙 |
| 1호봉을 급함.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.  |          |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     |     |
| 위희숙            | 1호봉을 급함. |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.        |     |
|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이귀애 |
| 1호봉을 급함.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.  |          | 지방간호기원에 임함.         |     |
| 양화자            | 2호봉을 급함. |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      |     |
|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김수원 |
| 1호봉을 급함.       |          | 동대문구(농지과장 직무대리) 주사  |     |
|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.  |          | 지방농림기사에 임함.         |     |
| 김희숙            | 8호봉을 급함. | 동대문구 농지과장 직무대리를 명함. |     |
|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28-28 제 413 호

시 보

1973.11.7.

|  |   |
|--|---|
| <p>성북구 (농지 지 방 행정<br/>과장직무대리) 주 사</p> <p>지 방 농 립 기사 에 임 함.</p> <p>11 호 봉 을 급 함.</p>            | <p>지 병 진 5 호 봉 을 급 함.</p> <p>종 로 구 근 무 를 명 함.</p>   |
| <p>성북구 농지 과 장 직 무 대 리 를 명 함.</p>   | <p>◎ 1973.11.10.</p>  |
| <p>시 민 과 지 방 행정<br/>주 사</p> <p>용 산 구 근 무 를 명 함.</p>  | <p>김 규 영 전 북 전 주 시 지 방 행정<br/>서 기 보 육 장 수</p> <p>서 울 특 별 시 전 입 을 명 함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성 동 구 사 회 지 방 행정<br/>주 사</p> <p>천 호 출 장 소 근 무 를 명 함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박 중 석 지 방 행정 서 기 보 에 임 함.</p> <p>4 호 봉 을 급 함.</p>  |
| <p>◎ 1973.11.6.</p>  | <p>동 대 문 구 지 방 의 무<br/>보 전 소 기 정</p> <p>마 포 구 보 전 소 장 에 보 함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동 대 문 구 보 전 소 장 에 보 함.</p> <p>마 포 구 보 전 소 지 방 의 무<br/>기 정</p> <p>동 대 문 구 보 전 소 장 에 보 함.</p> | <p>백 용 기 서 울 특 별 시 전 입 을 명 함.</p> <p>지 방 농 립 기사 에 임 함.</p>  |
| <p>◎ 1973.11.7.</p>  | <p>안 수 벽 3 호 봉 을 급 함.</p> <p>공 원 과 근 무 를 명 함.</p>   |
| <p>전 남 목 포 시 지 방 행정<br/>서 기</p> <p>서 울 특 별 시 전 입 을 명 함.</p> <p>지 방 행정 서 기 보 에 임 함.</p>         | <p>김 영 식 강 원 도 명 주 군 농 립 기사</p> <p>이 병 전 전 남 목 포 시 지 방 행정<br/>서 기 보</p> <p>서 울 특 별 시 전 입 을 명 함.</p> |
| <p>서 울 특 별 시 전 입 을 명 함.</p> <p>지 방 행정 서 기 보 에 임 함.</p>   | <p>6 호 봉 을 급 함.</p> <p>종 로 구 근 무 를 명 함.</p>   |
| <p>서 울 특 별 시 장</p>   |   |